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 신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

(참 조)

제 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 접수 안내

1. 귀하의 건승과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3.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 월보수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수당은 별첨 참조

나.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사업주가 선택)

다. 신청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2018년 말까지 지급예정)

라. 제주상공회의소 제출서류

- 첨부1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첨부2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검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추가서류 요청예정

마. 신청접수 : 첨부양식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바. 문 의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Tel. 064-757-2164, Fax. 064-757-2168, E-mail. xognsl0103@naver.com)

첨 부 : 1. 제주상공회의소 제출서류 양식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담당 : 강태훈 팀장 : 김종기 사무국장 : 강문성
협조자
시행 제주인자위 제2018 - 12호 (2018. 02. 19.) 접수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홈페이지 : <http://jejuhrd.or.kr>
전화 064-757-2164 전송 064-757-2168 / e-mail : xognsl0103@naver.com /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변경 월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 후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사유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 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뒷쪽)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③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기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기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변경사유"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지목·파목 및 거액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빙크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은"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삭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



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수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297mm × 210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m²])]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준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①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১০৩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권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I 개요

사업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요건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의무

-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 ❖ 사업시행 : 근로복지공단

- ❖ 신청대행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신청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 시행기간 : 2018. 1. 1. ~ 12. 31.

- ❖ 지원절차

- 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류접수(신청자)

- [첨부1]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첨부2]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②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서류전달(대행기관)

- ③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서류검토 후, 업체에 연락 및 세부서류요청

- ④ 업체지원금 지급(근로복지공단)

제주상공회의소 제출서류

- ❖ [첨부1]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첨부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자격요건 검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제주상공회의소에 우선 제출

※ 1차 자격요건 검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추가서류요청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급여대장,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월보수 190만원」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수당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인 「월보수 190만원」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아래 비과세소득에 대한 종류와 내용 숙지하고 민원 응대

□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관이 있는 비과세 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
 - ☞ 월 정액급여 18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로 확대될 예정
 - ☞ 관련법령 개정 이후(2.9 예정)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을 제외하고 190만원 미만인 경우 안정자금 신청 가능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아래 급여**
 - ① 일 · 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 ②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③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④ 방송 · 뉴스 · 신문사 등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 ⑤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경조사금액**
- **출산 ·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학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등**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등**